

2021년 경북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 및 기준정보 변경사항 안내

1. 주요 개정 사항 안내

□ 2021년 주요 정책 추진방향

- 지역사회 통합 돌봄(커뮤니티케어)」 관련 지역사회서비스 기획·개발 강화
 - ※ 「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(안)(1단계:노인커뮤니티케어 중심)」 발표 ('18.11)
 - 시·도별 '19년 대비 '20년 증액된 예산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*과 연계하여 제공 가능한 서비스를 신규 기획·개발하거나, 복지부 시범사업, 청년 건강 개선 등 서비스 이용 사각지대를 위한 서비스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
 - * (노인 선도사업) 부산 북구·부산진구, 광주 서구, 경기 부천·남양주·안산, 충북 진천, 충남 천안·청양, 전북 전주, 전남 순천, 경남 김해, 제주 서귀포
 - * (장애인 선도사업) 대구 남구, 제주 제주시

-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사회적경제조직 참여 활성화 지원
 - 지자체 및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지역사회서비스 운영 및 신규 서비스 개발과 관련하여 사회적경제조직 참여 활성화를 위해 교육 및 컨설팅 등 지원강화 (신설)

□ 본인부담금

- 본인부담금은 기준정보에 명시된 금액과 다르게 납부 받을 수 없음

2020년	2021년
<p>·이용자의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</p> <p>-본인부담금은 기준정보에 명시된 금액과 다르게 납부 받을 수 없으며, <u>제공기관에서 이용자에게</u> <u>재료비 등을 받을 경우 반드시 서비스 계약 전</u> <u>안내 필요(2020년 신설)</u></p>	<p>·이용자의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</p> <p>-본인부담금은 기준정보에 명시된 금액과 다르게 납부 받을 수 없음 -----(삭제)</p>

□ 전자바우처 시스템 결제 관련

■ 예외지급

구분	예외지급 사유	제출 서류	제출처
시·군·구청장 인정	· 바우처가 생성된 대상자에 한해 시·군·구청장이 불가피한 사유라고 인정하는 경우 ※ 대상자의 사망, 본인포기로 인해 바우처가 소멸된 경우 또는 대상자카드를 분실하였으나 자격만료월로 카드재발급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	· 청구공문 · 증빙서류 - 서비스제공기록지 - 실시간미결제사유서	시·군·구
바우처소멸, 바우처미생성 또는 오생성	· 전자바우처시스템 중단으로 바우처가 소멸되었거나 미생성 또는 오생성된 경우 ※ 전자바우처시스템 게시판을 통해 '예외청구 안내 공지 시'에만 청구 가능		한국사회보장정보원

□ 시·군·구청장 인정 사유

■ 제공기관은 시·군·구에 아래의 '시군구청장 인정사유 청구양식'을 포함한 청구공문 및 증빙서류(서비스제공기록지, 실시간미결제 사유서)을 작성하여 제출하고,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예외지급 신청

- (신청기준)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90일 전까지의 서비스제공 건만 신청 가능

※ 4.20 현재, 서비스제공일자가 1.21~4.20인 건만 청구 가능(1.21 이전 건은 청구 불가)

- (신청기간) 매월 1일 ~ 말일(단, 최초신청시작일은 매년 3월 1일임)

□ 제공인력 교육·훈련

■ 사이버교육 이수시간은 2021년에 한하여 최대 8시간(신규 제공기관 인력은 최대 12시간)까지 인정

(원칙) 제공기관의 장은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기관의 장과 관리책임자를 포함한 제공인력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(교육대상)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제공기관의 장 및 관리책임자, 제공인력

(필수 교육훈련 시간)

구 분	시 간	내 용
신규(대표·관리책임자, 제공인력)	12시간 이수 (년간)	-공통·기본교육 4시간 필수(※기존인력도 이수 가능) -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교육 8시간
대표·관리책임자, 제공인력	8시간 이수 (년간)	-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교육 8시간

(교육과정)

대상자	교육구분	교육내용
공통	기본 (☆신규제공인력 필수이수과목 4시간)	- 사회서비스 정책 및 관련법률 이해 - 지침변경 안내 및 기준정보 교육 -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개요 및 운영 방향 - 전자바우처시스템 기본 교육 및 부정결제 예방 - 안전관리 예방 - 개인정보보호의 이해 - 사회서비스·사회적경제 마인드 함양 - 소진예방 및 스트레스 관리 - 사회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- 사회서비스 프로그램 기획평가 - 신규 제공기관 컨설팅 - 실무서류 작성
제공기관장·관리책임자	기본	-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경영관리(인사노무, 회계, 경영전략, 마케팅 등)
	심화	-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-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전문 컨설팅
제공인력	기본	- 이용자 상담(진단·검사 등)·개입 및 종결 - 돌봄 서비스 운영 - 건강관리 지도 - 기타 서비스 특성에 따른 직무기본교육
	심화	- 돌봄분야 발달지도 - 상담및교육제공분야 사회서비스 슈퍼비전 - 건강관리분야 생애주기 및 질환별 건강관리 지도 - 기타 서비스 특성에 따른 직무심화교육

(인정되는 교육과정) 인정되는 이수과정

- 보건복지부,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,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,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,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실시하는 사회서비스 교육과정

※ 보수교육 신청

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(집합교육) <https://www.edukohi.or.kr>

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(사이버교육) <https://sscyber.kohi.or.kr>

한국사회보장정보원(집합·사이버교육) <http://edu.ssis.or.kr/index.jsp>

-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또는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의 제공기관 컨설팅을 받은 기관은 최대 4시간까지 교육으로 인정

※ 단, 등록된 서비스의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사, 안마사, 언어재활사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자격 또는 면허 소지자로서 이 자격 또는 면허로 해당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(제공기관장, 관리책임자 제외)는 관련법령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로 지역사회서비스 교육 인정(단, 해당연도 교육이수증 보관)

- 다만, 신규 제공기관 인력의 경우, 공통-기본교육 4시간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

□ 바우처 이용기간 연장 안내

■ 배경

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사회서비스 공백 방지 등을 위하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바우처 이용기간 연장 조치

■ 변경 내용

구 분	내 용
기존	- (이월) 생성된 바우처는 해당 월의 익월까지는 이월되어 결제가 가능 예시 1. 31에 생성된 2월 바우처는 이월되어 3. 31. 24시까지 결제가 가능
2021년	바우처 유효기간 종료일이 '21.1월 ~ 5월 31일 이내인 바우처에 대하여 바우처 이용기간을 '21.6.30일까지 연장

※ 예시 : 2021년 1월 바우처 결제종료일은 2021년 2월 28일까지이나, 1월 바우처를 2021년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이용기간 연장

2. 2021년 경북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기준정보 변경 안내

□ 아동·청소년 정서발달지원서비스 [030611]

2020년	2021년
<p>○서비스내용</p> <p>①클래식 이론 및 실기 -대여·휴대가능한 클래식 악기 중 택1하여 개인 및 그룹지도 (3인 이하)</p> <p>⑦정서프로그램 임상 사례 제공(연 1건 이상) ----- 삭제</p>	<p>○서비스내용</p> <p>① 클래식 이론 및 실기 - 대여·휴대 가능한 클래식 악기 중 택1하여 개인 및 그룹지도(3인 이하)</p> <p>※ 군 지역만 피아노 악기 수업 유예기간 연장</p> <p>⑧ 부모상담 : 필요시 월 2회, 1회당 10분</p>
<p>○제공인력 자격기준</p> <p>① 정서프로그램 제공인력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음악·미술·예술 재활(심리 또는 상담) 관련 학과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300시간 이상 보유자 ※ 단, “군”단위 지역과 “성장촉진지역”은 학사 이상 전공자로 실무경력 300시간 이상 보유자 * 가족·사회·복지학, 교육학, 유아교육학, 특수교육학, 초등학교학, 예체능교육학, 	<p>○제공인력 자격기준</p> <p>① 정서프로그램 제공인력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음악·미술·예술·놀이 재활(심리 또는 상담)관련 민간자격 취득 후 아동·청소년의 정서프로그램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* 교육학, 유아교육학, 특수교육학, 초등교육학, 예체능교육학, 재활학, 음악·미술·예술·놀이 재활(심리 또는 상담)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

<p>재활학, 공예, 무용, 순수미술, 응용미술 또는 음악 분야 석사 학위 및 “자격기본법” 제17조에 따른 음악·미술·예술(심리 또는 상담)관련 민간자격 또는 국가공인자격 취득 후 아동·청소년의 정서프로그램 관련 실무경력이 3개월 이상인 자</p> <p>※ 단, “군”단위 지역과 “성장촉진지역”은 학사 이상 전공자로 민간자격 또는 국가공인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3개월 이상인자</p>	<p>을 충족하는 자</p> <p>→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</p> <p>→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</p> <p>→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</p> <p>* 음악·미술·예술 재활(심리 또는 상담) 관련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실무경력 300시간 이상 보유자</p> <p>※ 단, “군”단위 지역과 “성장촉진지역”은 학사 이상 전공자로 실무경력 300이상 이상 보유자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□ **아동·청소년 바른체형 운동교실 [160311]**

2020년	2021년
<p>○서비스 대상</p> <p>·소득 : 기준중위소득 140% 이하</p>	<p>○서비스 대상</p> <p>·소득 :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</p>
<p>○시간/서비스 횟수</p> <p>·회당 90분/월 8회</p>	<p>○시간/서비스 횟수</p> <p>·회당 60분/월 8회</p>

□ **내일의 행복을 위한 아동 건강관리서비스 [160111]**

2020년	2021년
<p>○서비스 대상</p> <p>·선정우선순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순위 : 기초생활수급자 - 2순위 : 소년·소녀가장, 한부모가정 - 3순위 : 연령이 낮은 아동 우선 	<p>○서비스 대상</p> <p>·선정우선순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순위 : 비만도 또는 저체중 정도가 높은 아동 - 2순위 : 신청 서비스 이용이력이 없는 자 - 3순위 : 저소득 우선

□ **노인보행능력향상서비스 [050111]**

2020년	2021년
<p>○서비스 대상</p> <p>·소득 : 기준중위소득 140% 이하</p>	<p>○서비스 대상</p> <p>·소득 :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</p>
<p>○제공 기간</p> <p>·12개월</p>	<p>○제공 기간</p> <p>·12개월(재판정1회)</p>

□ **해피실버프로그램 [190311]**

2020년	2021년
<p>○서비스 대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선정우선순위 - 1순위 : 기초연금 수급자 - 2순위 : 기준중위소득 50%이내 - 3순위 : 기준중위소득 120%이내 	<p>○서비스 대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선정우선순위 - 1순위 : 바우처 생애최초 신청자 - 2순위 : 기준중위소득 50%이내 - 3순위 : 기준중위소득 120%이내

□ **장애인·노인을 위한 돌봄여행서비스 [060101]**

2020년	2021년
<p>○서비스 대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소득 : 기준중위소득 140% 이하 	<p>○서비스 대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소득 : 기준중위소득 140% 이하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

□ 노인 우울정서 예방관리서비스 [991511]

2020년	2021년
<p>○제공인력 자격기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미술치료사 ②심리상담사 	<p>○제공인력 자격기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“자격기본법” 제17조에 의한 미술·심리 상담관련 민간자격 취득자로 자격 취득 후 관련 실무 경력 6개월 이상인 자 ②미술관련 학위 취득 후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

□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[070101]

2020년	2021년
<p>○제공인력 자격기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재활공학 관련 또는 장애인 렌탈서비스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*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재활공학 관련 또는 장애인 렌탈서비스 분야 실무 경력 6개월 이상인 자 *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재활공학 또는 장애인 렌탈서비스 분야 실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 ※ 단, “군” 단위 지역과 “성장촉진지역”은 실무경력이 없다 	<p>○제공인력 자격기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에 의한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에 적합한 인력(①,②의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“제15조 1항에 따른 보조공학사”, 장애인복지법 “제72조 제1항에 따른 의지·보조기 기사”,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“제2조 제1항에 따른 물리치료사, 작업치료사” ② 장애인 재활공학, 보조공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

<p>라도 예외적으로 인정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장애인 재활공학·보조공학 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분야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* 장애인 재활공학·보조공학 관련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분야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* 장애인 재활공학·보조공학 관련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분야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
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□ 부모역량강화서비스 [170611]

2020년	2021년
<p>○서비스대상</p> <p>·연령 : 만 18세 이하 자녀(손주)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, 조부모</p>	<p>○서비스대상</p> <p>·연령 : 만 18세 이하 자녀(손주)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, 조부모 ※ 가구당 1회, 조부모일 경우 실제 양육하는 경우만 가능</p>